## Text 조사우수사례 평가 보고서

Text ('25上 명가번호: 31)

Special

개인·법인	업종(코드)	조사유형	외형구간	조사청
법인	건설(452109)	정기	1,000억원대	지방청

## Text I 조사성과(결과)

## Text 가. 조사대상 개요

Text ○ 조사법인은 '0X년 3월 설립된 강구조물, 데크플레이트 공사 전문 업체로 철강

Text 구조물 분야에서 전국 00위의 시공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표자 최◇◇이

Text 49%의 지분을 보유

Text - 기술개발을 통해 공법을 개선하고 사업범위를 확대하여 △△,◇◇,□□에
Text 생산공장을 증설하면서 매출액 증가세에 있음

Text \* ('19) 745억원→('20) 908억원→('21) 873억원→(**'22) 1,263억원**→('23) 1,663억원

#### Text 나. 적출성과

#### Text ○ 주요 적출 내역

Special

I	연번	조사항목	코드	적출요지(결정경정 사유)
	1)	부당행위계산부인 (용역·자산을 낮을 요율로 제공)	11304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채무보증용역 제공
	2	인건비 (가공급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인건비
	3	과다경비 등 부인 (공동경비 분담금액 초과)	11203	분담비율을 초과한 특수관계법인의 겸직 직원 인건비 등
	4	세액공제, 세액감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오류)	11501	전담 연구원이 아닌 연구원 급여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

Text (세무 컨설팅) 장기 미조사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세무상

Text 잘못이 없는지 정밀 진단을 실시했고, 조사법인은 조사팀이 지적한 문제를

Text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함

Text - 지적된 세무상 오류를 개선하여 법인세 신고세수를 증대시키고 성실신고를 Text 할 수 있는 풍토 조성

## Tex II 조사노하우

Special

**적출**①

❖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항목코드: 11304)

특수관계법인에 무상으로 채무보증용역 제공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예비조사) 조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지급보증을 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서

Text 확인되나 보증용역과 관련한 매출세금계산서가 없어 용역제공 대가를 수취

Text 하지 않은 혐의가 있어 검토대상으로 선정함

Text <mark>감사보고서(선사공시시스템)</mark>

**Table** DART ○ 현재목차 ○ 전체문서 모명 (3) 당기말 현재 회사가 타인을 위해 제공하고 있는 <mark>담보나 지급보증 내역</mark>은 다음과 문서목차 를 감사보고서 같습니다. 독립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단위: 천원) (첨부)재 무 제 표 제공받는자 제공처 보증한도 ■ 손 익 계 산 서 은행 채무보증 13,130,428 (주)신 ■ 자본변동표 보험 채무보증 (취)신 同時日本展开

Text ○ **(보증대가 미수취 혐의)** 차입금리는 신용등급과 담보, 시공실적, 재무상태

Text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보증을 했으므로 적정

Text 대가를 수취해야 함

#### Text 나, 착안사항 과련 법령 검토

Table 해석사례 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 및 담보제공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대상 여부

○ 사전 2017-법령해석 법인-0347, 2017.12.29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 법인세과-270, 2014.6.16

(요지) 특수관계인에게 지급보증, 담보제공 용역을 제공하고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음으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

Table 판례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채무보증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 조심-2015-서-5844(2016.08.08.), 대법원2006두125(2006.11.10.) 등

(요지)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채무보증, 연대보증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외 특수관계법인(해외현지법인)에게 무상·저리로 보증을 제공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봄

### Text **2. 조사기법**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조사법인은 ㈜신□□□□(조사법인 대표자 100% 출자)의 운영자금 대출 및 외화

Text 수입 신용장 발행에 대한 연대보증을 제공하였으며, 보증용역 대가를 수취

Text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

Text ○ 보증용역의 대가(수수료율)를 산정하기 위해 조사법인이 보증처(은행 등)와 맺은
Text 계약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성이 있음

Text - 업종특성을 고려할 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제공하는 보증과 보증별 수수료

Text 물을 조사법인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전문건설공제조합의 보증

Text 종류와 수수료율을 조사함

Text - 전문건설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조사법인의 면허종류, 신용등급, 도급구분, Text 보증채권자 정보 등을 입력하여 나타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Text 보증의 종류]

(백만원. %)

Table	보증처	조사법인의 연대보증 계약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증	보증금액	수수료율
	0 0 은행	산업시설자금대출	대출보증	10,708	0.8
	0058	신용장발행대출 지급보증의 보증		165	0.8
	○○은행	외화지급보증	지급보증의 보증	296	0.8
	0000보험	하자보증	하자보증	40	0.115
	000011	물품대금보증 선급금보증		800	0.746
		계	12,009		

Text \* 금융권과 맺은 연대보증 계약과 건설공제조합이 제공하는 보증의 성격이 유사한 것을

Text 조사법인과 논의해본 결과, 시설자금대출 보증은 "대출보증", 외화수입신용장 발행대출

Text 보증은 "지급보증의 보증", 하자보증은 "하자보증"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봄

#### Text 나. 납세자 의견 및 과세논리

- Text ( (납세자 의견) 조사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보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 Text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 Text 전문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이행보증에 적용받는 수수료율인 0.197%가 Text 타당하다고 주장
- Text ( **소사팀 과세논리)** 계약이행보증은 보증처가 계약자를 대신해 계약금의 Text 40%이상을 납부이행을 보증하는 계약이므로
  - Text 대출보증, 물품대금 보증과 같이 채무 전액의 납부이행을 보증하는 보증에는 Text 적용 불가하며
  - Text 오히려 보증의 성격별로 조사법인의 면허, 매출, 신용등급 등 수수료율에 Text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반영하여 도출된 값(위표, 수수료율)이 시가에 부합되는 Text 지급보증 수수료임

## Text 다. 조사팀의 의견 수용 및 현금 납부

Text 조사법인의 신용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반영하여 산출된 수수료율이 Text 보증용역의 시가로 봄이 타당하다는 조사팀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발적으로 Text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현금 납부함

Special

## **적출**②

❖ 인건비 (항목코드: 10501)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인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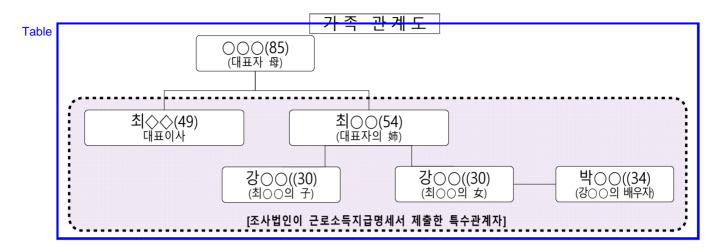
#### Text **1. 조사착**안

-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 Text (이 (예비조사) 조사대상 법인에 대한 정보분석 자료를 살펴보다가 대표자의 Text (누나와 조카 등 특수관계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을 확인함
    - Text 대표자의 누나 최○○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살펴보면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Text 국민연금 등만 있고 일반적인 근로자에게 보이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Text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항목이 없음

Text / (가공급여 혐의) 최○○는 '09년부터 모친과 같은 주소에서 현재까지 <u>\_\_</u> 보아 모친과 동거봉양 중이며 것으로 누나에게 생활비를 대표자는 주고 급여로 계상한 것으로 의심되어 착수 후 조사 근로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판례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본 처분(기각)

○ 조심 2019-구-0048 (2019.10.16.)

(요지) 근로계약서가 없고 근무사실 입증 결재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대표이사 지시로 비정기적으로 출근하며 별도 근무공간이 없는 등 통상적인 근로용역 제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생략…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대표이사의 배우자와 딸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생략…

#### Text **2. 조사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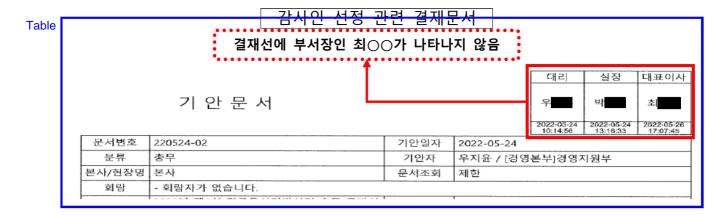
####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조사대상 사업연도의 조직도에 최○○가 "관리부장"으로 되어있으나 '23년에 Text 중도 퇴사(지급명세서)처리되어 있어 착수일 현재 근무하는 자리는 없지만,

Text - 조사대상 사업연도 지출전표와 결재서류에 최〇〇가 서명한 내역이 없고 Text ERP시스템에 본인의 휴가나 출장 등에 관한 기록이 전혀 나타나지 않음

Text ( (증거자료 확보) 관리부는 자금·회계뿐만 아니라 인사·총무 등을 겸하고 있어 Text 전자문서, 결재문서를 분석함

Text - 결산이나 감사인 선정처럼 관리부의 중요 문서의 결재선에 최〇〇가 없고 Text 현재 부서장(실장, 박〇〇)이 중간결재,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



Text ○ (대표자 면담) 대표자 가족의 민감정보를 세무대리인에게 묻기 어려운 점,

Text 대표자와 관련된 세무처리를 조사법인 직원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받기

Text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대표자와 개별 면담을 실시한 바,

Text 대표자는 본인의 누나가 '13년 경부터 자금관련 업무를 해오다가 어머니의 Text 건강에 문제가 있어 돌봐야 해서 '20년경부터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 함

Text <mark>나. 잘못된 세무처리에 대한 대표자의 시인</mark>

Text ○ 대표자는 세무상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Text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고지세액 전액을 납기내 현금 납부함

Special

## 적출③

❖ 과다경비 등 부인 (항목코드: 11203)

분담비율을 초과한 특수관계법인의 겸직 직원 인건비 등

## Text **1. 조사착안**

「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 대표자 최◇◇은 특수관계법인인 ㈜신□□□□의 대표를 겸직하면서 각 법인들

Text 로부터 급여를 수령하고 있으며 그 외 겸직 임직원으로 신고한 내역은 없음

Text - 대표자의 수행기사가 있으며, 재무·회계, 자금 및 총무·인사는 관리부 소속
Text 직원 6명이 특수관계법인인 ㈜신□□□□의 업무를 같이 하는데.

Text - 관련 인건비는 조사법인에서 전액 지급하면서 ㈜신□□□□에 별도로 비용을
Text 청구하지 않아 공동경비 안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 됨

#### Text 나. 착안사항 관련 법령 검토

Table 판례 공동경비 중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서울고등법원 2016-누-35416 (2016.09.27.)

(요지) 공동경비 중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해당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 조심-2011-중-2138 (2014.09.27.)외 다수

(요지)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공동경비 부담기준이 법인세법상 규정된 직전 산업연도 매출액 기준 등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공동경비를 과다부담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 ( **( 직무분석)** 조사법인의 조직도를 살펴보면 관리부에서 재무·회계, 자금 및 Text ( 총무·인사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으며)

Text <mark>- 회사 소개자료와 담당부서의 업무설명을 청취하였을 때, 특수관계법인인

Text </mark>㈜신□□□□는 철강구조물의 생산과 시공을 위한 조직만 있고 조사법인처럼

Text 자금이나 회계, 인사 관리부서는 따로 없는 것으로 파악됨

Text - 관리부 실장(부서장)은 ㈜신□□□□의 업무를 겸하고 있다고 진술하며 다른

Text 관리부 소속 직원들도 동일한 취지로 답변 함

Text \* 관리부 직원이 외부 전화를 받을 때, "신□□□□□입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음

Text (ERP시스템 등) 조사법인이 사용하는 ERP시스템은 특수관계법인과 함께 Text 사용하도록 개발되었으며, 회계프로그램은 조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계정 Text 으로 관리부에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Text - ERP시스템에서 직원들의 근태, 급여 등 인사관리부터 공사현장의 작업일보를 Text 관리하고 있으며, 회계프로그램 유지비용도 조사법인이 모두 지출 함

Text ○ (증거자료 확보) 조사법인의 관리부 소속 박○○실장이 특수관계법인인

Text ㈜신□□□□ 소속 직원의 승진과 보직발령을 한 문서나, 조사법인이 특수관계

Text 법인과 ERP 시스템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를 지출한 내용을 확인함

able		<del>-관리부에</del>				<del>인사발령 업무 수행</del>			
lable				인사관	련공지				
	제목	안사발령공지	(제2022-2호)	1					
	작성자	박물물실장			작성일	2022-01-26 08:59;34			
	첨부	첨부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기 승진(호칭변경) 및 보직발령에 대한 인사발령이 되었으므로 통지 합니다.								
	발령일시 : 2022 발령자 : 박				특수관계법	1인 생산공장직원 발령 공	지		
	부 서	성 명	직 급		-	령 사 항			
	제2공장		생산직	보직 발령(데크빈	· 조장) 【	5			
	All 2 6 8	1	생산직	보직 발령(지게치	조장) 🕹	9			

### Text 나. 공동경비의 분담 기준 설정

## Text 다. 조사팀의 의견 수용 및 현금 납부

Text 조사법인은 조사팀의 과세근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Text 작성하였으며, 불복 없이 납부기한 내 전액 현금 납부

Special

# 적출④

❖ 세액공제, 세액감면 (항목코드: 11501)

전담 연구원이 아닌 연구원 급여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 Text **1. 조사착안**

Text 가. 착안사항 도출 과정

Text (보도자료 참고) '25.2월, 우리청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관리를 통해 Text 부당공제 864개 기업에 270억원을 추정한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하였는데,

Text - 부당공제 적출사례에서 보이는 내용처럼 조사법인이 논문을 도용하거나,
Text 일반직원을 연구원으로 허위로 등록하였는지 여부 등 검토 필요

Table

보도참고자료 : R&D 세액공제 시후관리 결과



보도참고자료

ひんし こりきいう!

보도 시점 2025. 2. 20.(목) 12:00 배포 2025. 2. 20.(목) 10:00

#### 남의 논문 베껴 제출하고 R&D 세액공제?

- 타인 논문 도용 제출, 연구원 허위등록 등 부당공제 864개 기업, 270억 원 추징 잘 몰라 발생하는 '선의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전심사 적극 활용하세요!
- Text (사전심사 제도 활용여부 확인) 우리청은 '20년부터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

  Text 심사 제도」를 운영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의 불확실성을

  Text 해소하고 연구 인력개발 활동에 전념하도록 지원해 왔으며,
  - Text '22.1월부터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노트 작성방법을 누리집에 게재하거나,

    Text 「연구·인력 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가이드라인」을 발간하여 새액공제

    Text 편리하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함
  - Text 조사법인이 민원접수 이력에 연구·인력개발비 사전심사를 접수한 사실 없음

#### Text 나. 조사법인의 R&D관련 인건비 명세

Text ○ 조사대상 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발생명세를 살펴 Text 보면, 전담 연구원 6명의 인건비 등 25%를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확인됨

크린난 F 먼 크 에 크 이 이 에								
	① 연구과제명	②연구개발 인력 인건비						
	O DT AMB	성명	생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등 구분			
	합계			392,928,992				
SH	인중연구 외	78 <b>1</b> 1	19	180,000,800	[√]전담 [ ]보조, [ ]기타			
SH	SH 인증연구의	7	19	86,745,931	[√]전담 [ ]보조, [ ]기타			
SH	인증연구 외	임	19	51,175,203	[√]전담 [ ]보조, [ ]기타			
SH	인중연구 외	7	19	64,979,058	[√]전담 [ ]보조, [ ]기타			
SH	인증연구 외	문	19	49,720,000	[√]전담 [ ]보조, [ ]기타			
SH	인증연구 외	戶	19	4D,308,000	[√]전담 [ ]보조, [ ]기타			

Text ○ 중소기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전담 연구원을 두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Text 해당 직원이 전담요원인지, 학회에 게재한 논문이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할

Text 것으로 분석 됨

#### Text 다. 착안사항 관련 판례 검토

Table 판례 조특법상 '고유디자인을 위한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음

○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1557 (2024.03.21.), 상급심 진행중

(요지)이 사건 위탁용역은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의 설계도면 작성 및 인·허가 관련 행정업무로서, 이미 존재하는 설계방식을 다소 변용하거나 제반 사정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업성 등을 도모하기 위해 변형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위탁개발비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Table 심판례 연구 전담업무만을 하지 않은 연구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 대상 아님

○ 조심-2014-중-3224 (2014.08.11.)

(요지) 연구업무만을 전담하지 아니하고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연구전담요원으로 표기된 해당 임원 들...생략...쟁점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 처분됨

#### Text **2. 조사기법**

Text 가. 적출항목 조사 방법

Text ○ 조사법인은 기업부설연구소를 등록하고 별도의 구분된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Text 전담요원을 연구소로 발령하는 등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음

Text - 또한 강구조물 시공과 관련된 특허를 다수 등록하고, 서울대 교수출신의

Text 구조공학 박사를 연구소장으로 두는 등 정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것

Text 처럼 보였음

Text ○ 그런데 일부 직원은 시공현장을 관리하거나, 본사의 지원업무를 하는 등 Text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혐의가 있음을 기안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었음

ble										
					차장	상무	대리	상무		
		기 안 문 서			임	ol	박	구		
					2022-07-29 16:43:53	2022-08-01 07:45:48	2022-08-01 08:12:36	2022-08-02 14:15:22		
	문서번호	220729-04	기안일자	202	2-07-29					
	분류	공사	기안자	임	/ [공사	부]공사부				
	본사/현장명	3구역 주상복합 신축공사	문서조회	열림			**			
	회람									
	제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직무교육(건설업 및 기타산업)	처리기한			3.30 Marin				

### Text 나. 납세자 주장 및 과세논리

- Text (납세자 의견)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한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공사현장과

  Text 인력 수급에 따라 연구원이 다른 일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은 지극히

  Text 짧고 업무의 대부분은 공법 개발과 같은 연구 활동이며,
  - Text 연구소장이 학회에 게재한 논문이나 연구노트 등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Text 공법을 개발하고 특허등록과 갱신을 꾸준히 하고 있어 세액공제는 정당함
- Text ( **조사팀 과세논리)** R&D 세액공제는 이미 손비로 계상된 인건비에 대해 세액

  Text 공제를 해주는 이중 혜택으로 그 요건이 엄격하며 겸직하는 경우 세액공제

  Text 대상이 될 수 없는데,
  - Text 조사팀이 확보한 많은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등 3명은 상당한 Text 기간동안 시공현장이나 본사에서 근무한 사실이 명백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Text 보기 어려워 세액공제 배제는 정당함

## Text 다. 겸직에 관한 추가 증거자료 확보

- Text 고구이 등 3명이 본사의 지원업무, 현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자료를 추가로

  Text 확보하고 해당 연구원을 면담하여, 이들이 상당한 기간동안 겸직을 해왔음을

  Text 입증하였으며
  - Text 추가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세액공제의 입법취지를 설명하고 조사법인은

    Text 과세 타당성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확인서를 작성, 조사종결 후 불복 없이

    Text 전액 현금 납부함

### Text 라. 기타

Text ○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심사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인력 개발비 사전 Text 심사 가이드라인(책자)를 참고하여 연구노트 보완 등 안내